

서울연구원 · 한국사회학회 서울의 사회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서울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.)는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, 궁극적으로 서울의 사회학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관심분야인 서울의 사회학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, 공동연구, 연구결과 공유를 추진하고, 연구정보와 자료를 공동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범위) 양 기관은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서울의 사회학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, 전문인력 상호 교류 실시
2. 연구결과 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토론회 등) 개최
3.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서울의 사회의 질 개선에 대한 공동연구 및 발전 방안 협력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제3조(협약 준수)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경비 부담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
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제6조(비밀 유지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제7조(협약서 교환)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 대표가 서명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.

2016년 2월 4일



서울연구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
원장 김수현



한국사회학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25

회장 조성남

한국사회학회 · 서울연구원 서울의 사회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한국사회학회와 서울연구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.)은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, 궁극적으로 서울의 사회학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관심분야인 서울의 사회학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, 공동연구, 연구결과 공유를 추진하고, 연구정보와 자료를 공동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범위) 양 기관은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서울의 사회학 연구에 대한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, 전문인력 상호 교류 실시
2. 연구결과 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토론회 등) 개최
3.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서울의 사회의 질 개선에 대한 공동연구 및 발전 방안 협력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제3조(협약 준수)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경비 부담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
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제6조(비밀 유지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제7조(협약서 교환)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 대표가 서명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는 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.

2016년 2월 4일



한 국 사 회 학 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25

회 장 조 성 남



서 울 연 구 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
원 장 김 수 현